#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_				



제 1172 호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1-254호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 결정고시)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1-2086호 (지방의회 부의안건 공고) ...... 5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 卫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253호

###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고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7.)에서 의결, 확정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1. 회계별 예산규모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38,363,560	514,286,373	24,077,187	4.68%
일	반	회	계	513,911,719	489,692,795	24,218,924	4.95%
특	별	회	계	24,451,841	24,593,578	△141,737	△0.58%
7	기 타 특	- 별 호	회 계	24,451,841	24,593,578	△141,737	△0.58%
	발전소주	변지역지	원사업	761,637	761,637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342,212	343,949	△1,737	△0.51%
	폐기물처	리시설설	치비용	10,479,086	10,369,753	109,333	1.05%
	지 하	수 관	<u> 리</u>	62,388	62,388	0	0.00%
	운서토지	구획정i	의사업	25,931	25,931	0	0.00%
	기 빈	: 시	설	328,935	329,631	△696	△0.21%
	주	차	장	12,451,652	12,700,289	△248,637	△1.96%

### 2.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가.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513,911,719	489,692,795	24,218,924	4.95%
지방세수입	144,769,000	144,769,000	0	0.00%
지방세	144,769,000	144,769,000	0	0.00%
보통세	142,969,000	142,969,000	0	0.00%
지난년도수입	1,800,000	1,800,000	0	0.00%
세외수입	31,737,379	30,101,692	1,635,687	5.43%
경상적세외수입	21,003,628	21,286,251	△282,623	△1.33%
재산임대수입	423,913	428,336	△4,423	△1.03%
사용료수입	2,230,444	2,509,944	△279,500	△11.14%
수수료수입	6,229,833	6,229,833	0	0.00%
사업수입	250,000	250,000	0	0.00%
징수교부금수입	9,940,414	9,940,414	0	0.00%
이자수입	1,929,024	1,927,724	1,300	0.07%
임시적세외수입	8,677,096	6,941,870	1,735,226	25.00%
재산매각수입	581,200	575,100	6,100	1.06%
기타수입	2,696,646	1,137,520	1,559,126	137.06%
지난연도수입	5,399,250	5,229,250	170,000	3.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56,655	1,873,571	183,084	9.77%
과징금	37,500	37,500	0	0.00%
이행강제금	400,000	400,000	0	0.00%
변상금	102,690	99,911	2,779	2.78%
과태료	755,200	755,160	40	0.01%
부담금	761,265	581,000	180,265	31.03%
지방교부세	19,373,596	19,188,596	185,000	0.96%
지방교부세	19,373,596	19,188,596	185,000	0.96%
지방교부세	19,373,596	19,188,596	185,000	0.96%
조정교부금등	24,145,456	23,998,775	146,681	0.6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4,145,456	23,998,775	146,681	0.6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4,145,456	23,998,775	146,681	0.61%
보조금	248,876,508	226,624,952	22,251,556	9.82%
국고보조금등	161,870,456	156,208,290	5,662,166	3.62%
국고보조금등	161,870,456	156,208,290	5,662,166	3.62%
시・도비보조금등	87,006,052	70,416,662	16,589,390	23.56%
시・도비보조금등	87,006,052	70,416,662	16,589,390	23.56%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009,780	45,009,780	0	0.00%
보전수입등	45,009,780	45,009,780	0	0.00%
잉여금	38,494,732	38,494,732	0	0.00%
전년도이월금	6,515,048	6,515,048	0	0.00%

※ 과목은 예산편성지침의 세입과목 장, 관, 항임

#### 2) 세 출

(단위:천원)

	구	,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513,911,719	489,692,795	24,218,924	4.95 %
일	반 공	공	행	정	40,584,650	38,697,123	1,887,527	4.88 %
공	공 질	서 !	및 안	전	16,797,280	2,097,821	14,699,459	700.70 %
亚				육	10,541,526	11,362,005	△820,479	△7.22 %
문	화	및	관	광	18,466,606	20,261,625	△1,795,019	△8.86 %
환				경	26,455,809	26,919,989	△464,180	△1.72 %
사	회	-	보	지	216,889,458	209,381,452	7,508,006	3.59 %
보				건	10,576,495	11,194,399	△617,904	△5.52 %
농	림 해	ું:	수	산	14,405,409	14,559,078	△153,669	△1.06 %
산의	업・중소	기 업	및에L	크지	14,688,146	14,860,838	△172,692	△1.16 %
亚	통	및	물	류	26,715,260	23,152,617	3,562,643	15.39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2,959,046	43,615,141	△656,095	△1.50 %
예		別		비	3,013,963	2,000,882	1,013,081	50.63 %
기				타	71,818,071	71,589,825	228,246	0.32 %

### 나. 기타특별회계

#### 1) 세 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761,637	761,637	0	0.00%
보조금	733,500	733,500	0	0.00%
국고보조금등	733,500	733,500	0	0.00%
국고보조금등	733,500	733,5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137	28,137	0	0.00%
보전수입등	28,137	28,137	0	0.00%
잉여금	12,949	12,949	0	0.00%
전년도이월금	15,188	15,188	0	0.00%

#### 【의료급여기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42,212	343,949	△1,737	△0.51%
세외수입	13,388	16,500	△3,112	△18.86%
경상적세외수입	1,388	1,500	△112	△7.47%
이자수입	1,388	1,500	△112	△7.47%
임시적세외수입	12,000	15,000	△3,000	△20.00%
기타수입	10,000	10,000	0	0.00%
지난연도수입	2,000	5,000	△3,000	△60.00%
보조금	262,556	261,506	1,050	0.40%
국고보조금등	206,045	205,205	840	0.41%
국고보조금등	206,045	205,205	840	0.41%
시・도비보조금등	56,511	56,301	210	0.37%
시・도비보조금등	56,511	56,301	210	0.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268	65,943	325	0.49%
보전수입등	62,750	62,750	0	0.00%
잉여금	39,107	39,107	0	0.00%
전년도이월금	23,643	23,643	0	0.00%
내부거래	3,518	3,193	325	10.18%
전입금	3,518	3,193	325	10.18%

### 【페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479,086	10,369,753	109,333	1.05%
세외수입	211,333	0	211,333	순증
경상적세외수입	211,333	0	211,333	순증
이자수입	211,333	0	211,333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67,753	10,369,753	△102,000	△0.98%
보전수입등	10,267,753	10,267,753	0	0.00%
잉여금	10,267,753	10,267,753	0	0.00%
내부거래	0	102,000	△102,000	순감
예탁금및예수금	0	102,000	△102,000	순감

#### 【지하수관리】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2,388	62,388	0	0.00%
세외수입	11,000	11,00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0	0.00%
이자수입	1,000	1,000	0	0.00%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0	10,000	0	0.00%
부담금	10,000	1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388	51,388	0	0.00%
보전수입등	51,388	51,388	0	0.00%
잉여금	51,388	51,388	0	0.00%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25,931	25,931	0	0.00%
세외수입	1,097	1,097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097	1,097	0	0.00%
이자수입	1,097	1,09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34	24,834	0	0.00%
보전수입등	24,834	24,834	0	0.00%
잉여금	24,834	24,834	0	0.00%

### 【기반시설】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중감	증감률
총 계	328,935	329,631	△696	△0.21%
세외수입	11,858	12,554	△696	△5.54%
경상적세외수입	11,858	12,554	△696	△5.54%
징수교부금수입	7,064	6,554	510	7.78%
이자수입	4,794	6,000	△1,206	△20.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7,077	317,077	0	0.00%
보전수입등	317,077	317,077	0	0.00%
잉여금	317,077	317,077	0	0.00%

#### 【주차장】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12,451,652	12,700,289	△248,637	△1.96%
세외수입	4,053,730	4,053,73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310,848	2,310,848	0	0.00%
사용료수입	2,097,312	2,097,312	0	0.00%
징수교부금수입	148,536	148,536	0	0.00%
이자수입	65,000	65,00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00,000	400,000	0	0.00%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지난연도수입	400,000	400,0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2,882	1,342,882	0	0.00%
과태료	1,300,000	1,300,000	0	0.00%
부담금	42,882	42,882	0	0.00%
지방교부세	33,000	33,000	0	0.00%
지방교부세	33,000	33,000	0	0.00%
지방교부세	33,000	33,000	0	0.00%
조정교부금등	200,000	200,000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0,000	200,000	0	0.0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0,000	200,000	0	0.00%
보조금	1,883,250	1,883,25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1,883,250	1,883,250	0	0.00%
시・도비보조금등	1,883,250	1,883,25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281,672	6,530,309	△248,637	△3.81%
보전수입등	352,906	352,906	0	0.00%
잉여금	287,224	287,224	0	0.00%
전년도이월금	65,682	65,682	0	0.00%
내부거래	5,928,766	6,177,403	△248,637	△4.02%
전입금	5,928,766	6,177,403	△248,637	△4.02%

## 2) 세 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61,637	761,637	0	0.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17	1,317	0	0.00%
산업 • 중소기업일반	1,317	1,317	0	0.00%
국토및지역개발	760,320	760,320	0	0.00%
지역및도시	760,320	760,320	0	0.00%

#### 【의료급여기금】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42,212	343,949	△1,737	△0.51%
사회복지	289,324	291,236	△1,912	0.66%
기초생활보장	289,324	291,236	△1,912	0.66%
기타	52,888	52,713	175	0.33%
기타	52,888	52,713	175	0.33%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10,479,086	10,369,753	109,333	1.05%
환경보호	10,479,086	10,369,753	109,333	1.05%
폐기물	10,479,086	10,369,753	109,333	1.05%

【지하수관리】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62,388	62,388	0	0.00%
국토및지역개발	62,388	62,388	0	0.00%
수자원	62,388	62,388	0	0.00%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25,931	25,93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25,931	25,931	0	0.00%
지역및도시	25,931	25,931	0	0.00%

#### 【기반시설】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28,935	329,631	△696	△0.21%
국토및지역개발	328,935	329,631	△696	△0.21%
지역및도시	328,935	329,631	△696	△0.21%

#### 【주차장】 (단위:천원)

구 분	2021년도 제3회추경	2021년도 제2회추경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12,451,652	12,700,289	△248,637	△1.93 %
교통및물류	11,929,602	12,178,239	△248,637	△2.04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1,929,602	12,178,239	△248,637	△2.04 %
기타	522,050	522,050	87	0.00 %
기타	522,050	522,050	87	0.00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254호

### 2022년도 일반 ·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 결정고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7.)에서 의결, 확정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1. 202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475,628,519	411,481,913	64,146,606	15.59%
일	반	회	계	464,561,025	391,773,723	72,787,302	18.58%
특	별	회	계	11,067,494	19,708,190	△8,640,696	△43.84%
7	기 타 특	별	회 계	11,067,494	19,708,190	△8,640,696	△43.84%
	발전소주병	변지역지	원사업	515,100	733,500	△218,400	△29.78%
	의 료 급	급 여	기 금	353,388	336,344	17,044	5.07%
	폐기물처리	리시설설	치비용	103,500	10,369,753	△10,266,253	△99.00%
	지 하	수 된	관 리	30,440	20,440	10,000	48.92%
	운서토지	구획정	리사업	25,273	26,564	△1,291	△4.86%
	기 반	시	설	300,000	300,000	0	0.00%
	주	차	장	9,739,793	7,921,589	1,818,204	22.95%

## 2.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가. 일반회계

1) 세 입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64,561,025	391,773,723	72,787,302	18.58%
지방세수입	151,549,092	142,369,000	9,180,092	6.45%
지방세	151,549,092	142,369,000	9,180,092	6.45%
보통세	149,849,092	140,869,000	8,980,092	6.37%
지난년도수입	1,700,000	1,500,000	200,000	13.33%
세외수입	29,365,933	29,970,959	△605,026	△2.02%
경상적세외수입	21,557,037	21,526,678	30,359	0.14%
재산임대수입	453,993	453,511	482	0.11%
사용료수입	3,259,725	3,190,944	68,781	2.16%
수수료수입	6,022,689	6,305,833	△283,144	△4.49%
사업수입	250,000	250,000	0	0.00%
징수교부금수입	9,827,000	9,398,000	429,000	4.56%
이자수입	1,743,630	1,928,390	△184,760	△9.58%
임시적세외수입	6,187,236	6,614,270	△427,034	△6.46%
재산매각수입	50,000	50,100	△100	△0.20%
기타수입	2,787,065	1,284,920	1,502,145	116.91%
지난년도수입	3,350,171	5,229,250	△1,879,079	△35.9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1,660	1,830,011	△208,351	△11.39%
과징금	35,500	37,500	△2,000	△5.33%
이행강제금	400,000	400,000	0	0.00%
변상금	69,000	99,911	△30,911	△30.94%
과태료	780,160	761,600	18,560	2.44%
부담금	337,000	531,000	△194,000	△36.53%
지방교부세	20,881,000	15,505,000	5,376,000	34.67%
지방교부세	20,881,000	15,505,000	5,376,000	34.67%
지방교부세	20,881,000	15,505,000	5,376,000	34.67%
조정교부금등	18,550,000	10,500,000	8,050,000	76.67%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8,550,000	10,500,000	8,050,000	76.67%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8,550,000	10,500,000	8,050,000	76.67%
보조금	215,565,000	176,678,764	38,886,236	22.01%
국고보조금등	136,741,519	118,323,866	18,417,653	15.57%
국고보조금등	136,741,519	118,323,866	18,417,653	15.57%
시・도비보조금등	78,823,481	58,354,898	20,468,583	35.08%
시・도비보조금등	78,823,481	58,354,898	20,468,583	35.08%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지방채	5,900,000	0	5,900,000	순증
국내차입금	5,900,000	0	5,900,000	순증
차입금	5,900,000	0	5,900,000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750,000	16,750,000	6,000,000	35.82%
보전수입등	22,750,000	16,750,000	6,000,000	35.82%
잉여금	20,000,000	14,000,000	6,000,000	42.86%
전년도이월금	2,750,000	2,750,000	0	0.00%

※ 과목은 예산편성지침의 세입과목 장, 관, 항임

#### 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464,561,025	391,773,723	72,787,302	18.58 %
일	반 공	공 행	정	51,423,133	30,205,289	21,217,844	70.25 %
공	공 질 기	너 및 안	전	677,915	1,988,981	△1,311,066	△65.92 %
亚			육	10,545,998	6,428,026	4,117,972	64.06 %
문	화 5	및 관	광	19,823,042	13,327,485	6,495,557	48.74 %
환			경	26,103,651	25,112,683	990,968	3.95 %
사	회	복	지	190,463,205	165,281,328	25,181,877	15.24 %
보			건	12,480,455	9,273,558	3,206,897	34.58 %
농	림 해	양 수	산	14,140,311	12,021,102	2,119,209	17.63 %
산	업・중소기	기업및에	너지	7,481,279	8,863,232	△1,381,953	△15.59 %
亚	통 등	및 물	류	20,488,996	15,107,996	5,381,000	35.62 %
국	토 및 2	이 역 개	발	33,733,096	31,231,582	2,501,514	8.01 %
예	ŀ	]	비	2,679,939	2,924,799	△244,860	△8.37 %
기			타	74,520,005	70,007,662	4,512,343	6.45 %

#### 나. 기타특별회계

#### 1) 세 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515,100	733,500	△218,400	△29.78%
보조금	515,100	733,500	△218,400	△29.78%
국고보조금등	515,100	733,500	△218,400	△29.78%
국고보조금등	515,100	733,500	△218,400	△29.78%

#### 【의료급여기금】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53,388	336,344	17,044	5.07%
세외수입	14,500	16,500	△2,000	△12.12%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0	0.00%
이자수입	1,500	1,50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3,000	15,000	△2,000	△13.33%
기타수입	10,000	10,000	0	0.00%
지난년도수입	3,000	5,000	△2,000	△40.00%
보조금	306,060	290,651	15,409	5.30%
국고보조금등	239,248	228,521	10,727	4.69%
국고보조금등	239,248	228,521	10,727	4.69%
시・도비보조금등	66,812	62,130	4,682	7.54%
시・도비보조금등	66,812	62,130	4,682	7.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828	29,193	3,635	12.45%
보전수입등	30,000	26,000	4,000	15.38%
잉여금	15,000	13,000	2,000	15.38%
전년도이월금	15,000	13,000	2,000	15.38%
내부거래	2,828	3,193	△365	△11.43%
전입금	2,828	3,193	△365	△11.43%

#### 【페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103,500	10,369,753	△10,266,253	△99.00%
세외수입	1,500	10,369,753	1,500	순증
경상적세외수입	1,500	10,267,753	1,500	순증
이자수입	1,500	10,267,753	1,5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000	10,369,753	△10,267,753	△99.02%
보전수입등	102,000	10,267,753	△10,267,753	△99.01%
잉여금	102,000	10,267,753	△10,267,753	△99.01%

#### 【지하수관리】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0,440	20,440	10,000	48.92%
세외수입	11,000	11,00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000	1,000	0	0.00%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이자수입	1,000	1,0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0	10,000	0	0.00%
부담금	10,000	10,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440	9,440	10,000	105.93%
보전수입등	19,440	9,440	10,000	105.93%
잉여금	19,440	9,440	10,000	105.93%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25,273	26,564	△1,291	△4.86%
세외수입	439	1,097	△658	△59.98%
경상적세외수입	439	1,097	△658	△59.98%
이자수입	439	1,097	△658	△59.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834	25,467	△633	△2.49%
보전수입등	24,834	25,467	△633	△2.49%
잉여금	24,834	25,467	△633	△2.49%

【기반시설】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00,000	300,000	0	0.00%
세외수입	6,000	6,00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6,000	6,000	0	0.00%
이자수입	6,000	6,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4,000	294,000	0	0.00%
보전수입등	294,000	294,000	0	0.00%
잉여금	294,000	294,000	0	0.00%

### 【주차장】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9,739,793	7,921,589	1,818,204	22.95%
세외수입	4,139,760	4,241,357	△101,597	△2.40%
경상적세외수입	2,437,760	2,541,357	△103,597	△4.08%
사용료수입	2,222,760	2,386,357	△163,597	△6.86%
징수교부금수입	150,000	90,000	60,000	66.67%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이자수입	65,000	65,00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00,000	400,000	0	0.00%
지난년도수입	400,000	400,00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02,000	1,300,000	2,000	0.15%
이행강제금	2,000	0	2,000	순증
과태료	1,300,000	1,300,000	0	0.00%
보조금	1,778,750	1,883,250	△104,500	△5.55%
국고보조금등	1,749,000	0	1,749,000	순증
국고보조금등	1,749,000	0	1,749,000	순증
시・도비보조금등	29,750	1,883,250	△1,853,500	△98.42%
시・도비보조금등	29,750	1,883,250	△1,853,500	△98.4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21,283	1,796,982	2,024,301	112.65%
내부거래	3,821,283	1,796,982	2,024,301	112.65%
전입금	3,821,283	1,796,982	2,024,301	112.65%

#### 2) 세 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515,100	733,500	218,400	△29.78 %
국토및지역개발	515,100	733,500	218,400	△29.78 %
지역및도시	515,100	733,500	218,400	△29.78 %

#### 【의료급여기금】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353,388	336,344	17,044	5.07 %
사회복지	300,600	254,522	46,078	18.10 %
기초생활보장	300,600	254,522	46,078	18.10 %
기타	52,788	81,822	△29,034	△35.48 %
기타	52,788	81,822	△29,034	△35.48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103,500	10,369,753	△10,266,253	△99.00 %
환경	103,500	10,369,753	△10,266,253	△99.00 %
폐기물	103,500	10,369,753	△10,266,253	△99.00 %

#### 【지하수관리】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0,440	20,440	10,000	48.92 %
국토및지역개발	30,440	20,440	10,000	48.92 %
수자원	30,440	20,440	10,000	48.92 %

####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25,273	26,564	1,291	△4.86 %
국토및지역개발	25,273	26,564	1,291	△4.86 %
지역및도시	25,273	26,564	1,291	△4.86 %

### 【기반시설】

(단위:천원)

구 분	1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증감	중감률
총 계		300,000	300,000	0	0.00 %
국토및지역개발		300,000	300,000	0	0.00 %
지역및도시		300,000	300,000	0	0.00 %

#### 【주차장】

구 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도 본예산	비교중감	중감률
총 계	9,739,793	7,921,589	1,818,204	22.95 %
교통및물류	9,217,989	7,413,077	1,804,912	24.35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9,217,989	7,413,077	1,804,912	24.35 %
기타	521,804	508,512	13,292	2.61 %
기타	521,804	508,512	13,292	2.61 %

#### 공 卫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2080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 가. 공영주차장 감면 사항 추가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감면 규정 개정(안 제5조 제6호)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안 제5조 제9호)
  - 인근 거주자에 대한 월 정기 주차요금 할인 신설(안 제5조 제12호)
- 나. 관리수탁자의 자격 개정(안 제10조 제2호)
- 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신설(안 제12조의4)
- 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개정(안 제13조)
- 마.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제17조)
- 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 개정(안 제17조의2)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월 11일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교통운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수과(교통행정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교통행정팀)

▷ 전화: 032)760-7560 [FAX 032)760-7688]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차장법」"을 "조례는 「주차장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라" 를 ""구"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 이"를 ""공영주차장"이"로, "별표1과 같이 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으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로,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영주차장관리 자는 제1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을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로, "아니한 자에 대하여"를 "않은 사람에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를 "둘"로, "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제5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으로, "확인서를 소지한 자"를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예우 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기입한"을 "적은"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이륜자동차 :"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경우의 주차요금 :"을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받은자로서 시장"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을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승한"을 "갈아탄"으로, "경우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저공해자동차로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 : 50퍼센트 감면"을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차쿠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를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로, "탑승한" 을 "탄"으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를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아이모아카드"로, "3자녀"를 "2자녀"로,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을 "증명자료(주민 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정에 따라 주차가 제한되는 경우"를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로, "따라 차이나타운(제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를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북성동 4, 6~11통)"을 "(개항동 3, 5~10통)" 로, "주민 : 100퍼센트 감면(토요일 및 공휴일은 4층 50면에 한함)"을 "주민: 100 퍼센트 감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용고객:"을 "이용고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 · 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3.「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 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한다): 50퍼센트 감면

- 12. 정기권을 운영 중인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 대해서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해당 공영주차장의 경계선부터 거주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 나.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법정동
- 제6조 중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를 "법 제8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발화성"을 "자동차에 발화성"으로, "차량"을 "경우"로 한다.

- 제8조의 제목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을 기재하여"를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로. "별표4에 따른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 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를 "별표 3과 같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에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 차장에 한한다)"을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6에 따른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 제9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을 "(하역주차구획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하역주차구간"을 각각 "하역주차구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하역"을 "하역"으로, "별표4"를 "별표 2"로,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을 "구청장이"로,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위탁 관리하는"을 "위탁관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입찰의 참가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쟁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 관리수수료"를 각각 "위탁관리 수수료"로 한다.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10조의2 중 "제10조에 따른"을 "제10조의"로, "지도·감독한다"를 "지도·감독한다" 로 한다.

- 제12조제1항 본문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를 "않"으로 한다.
- 제12조의2의 제목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을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을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전용 주차구획"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 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주차구획은"을 "전용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 대상 차량을"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별표 1의1과 같이 하며 이를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의2제6항 중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한다.
- 제12조의3제2항 중 "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를 "별표 1제4호에 따른다"로 한다.
-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착 하는"을 "붙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에는 주차장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전일주차권: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 환불 나. 월 정기주차권: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2.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 또는 이용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제15조제1항 중 "별표7"을 "별표 5"로,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일 것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는 법정주차대수(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부분 제외)의 30 퍼센트 이하일 것
- 제17조의2제1항 중 "기계식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경우"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별표 2"를 "한다) 별표 2"로, "2분의1의"를 "2분의 1"로 한다.
-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성"을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으로, "600미터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 시설물이"를 "해당 시설물이"로,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와"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로, "당해 시설물과의"를 "해당 시설물과의"로, "인천광역시 관할동·리"를 "구 관할 동"으로 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으로, "당해 노외주차장중"을 "해당 노외주차장 중"으로, "총설치비용"을 "총 설치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를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을 "지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로, "조사, 발표하는"을 "조사・발표하는"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별표8"을 "별표 6"으로, "날로"를 "날"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1의"를 "1"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터 보조를 받"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조받"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수령일로"를 "수령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자 포함)"을 "(이자를 포함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표 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표 4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표 5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표 6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그ㅂ	급 1회 주차권		거이즈키긔	의 저기즈키긔
구 분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전일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 비 고 -

- 1. 전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3.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5. 주차요금의 특례

-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나.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의2]

## 전용주차구획 월별 요금표(제12조의2제4항 관련)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30,000원	20,000원	15,000원

[별표 2]

###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90cm

주차장 이용 안내

80cm

-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 3. 주차장의 이용시간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1.8M \sim 2.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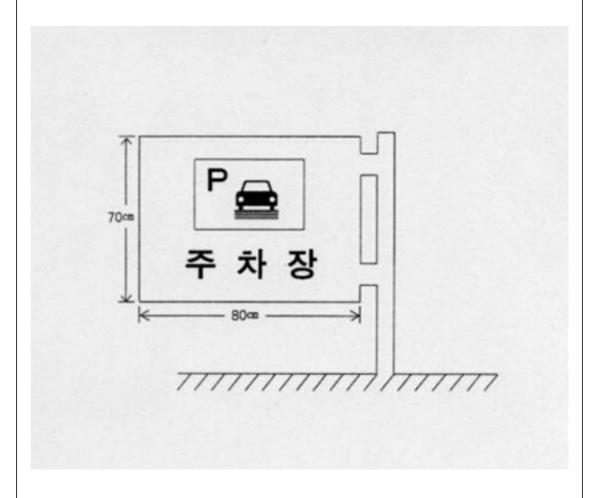
- 비 고 -

구 부	7Î =	색 채	
一	재 료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 노외주차장 표시(제8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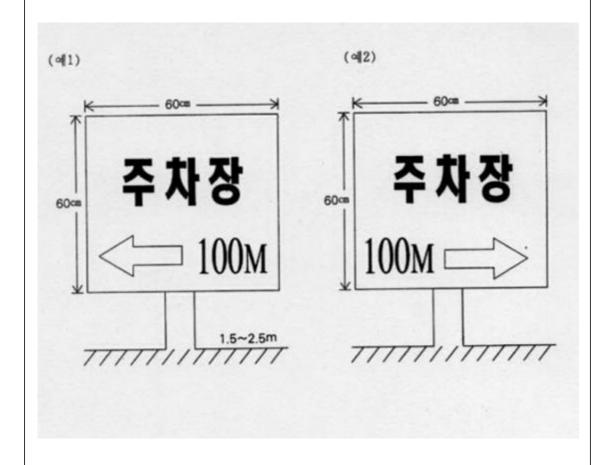


- 비 고 -

-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8조제4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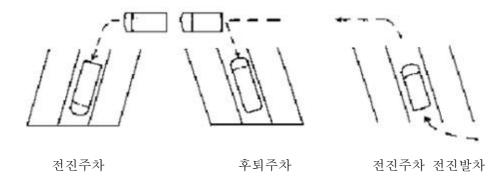
○ 색 채: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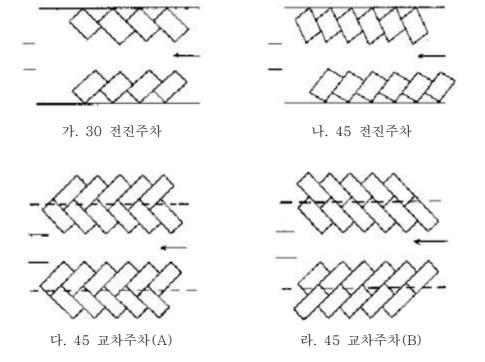
####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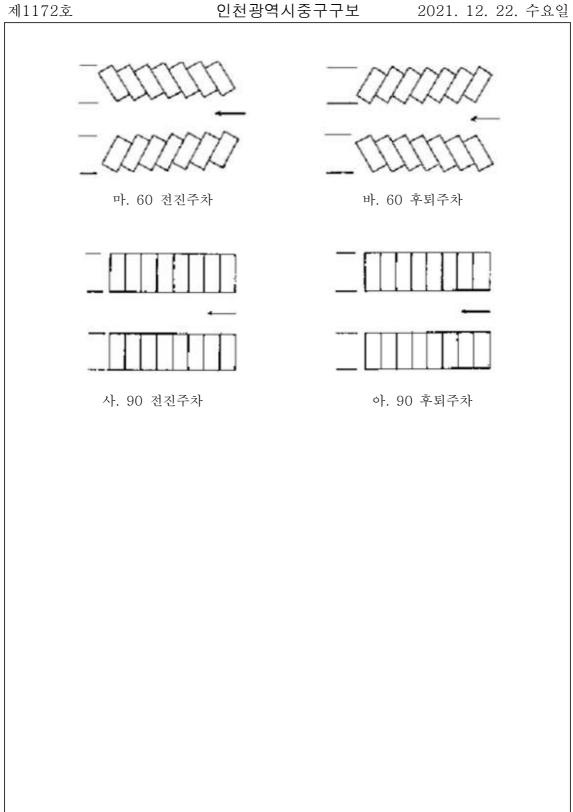
###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1. 주차방법



#### 2. 배치기준





[별표 6]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9조제2항 관련)

(앞 면)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1. 건축물위치:
- 2. 사 용 자:
- 3. 사용기간:
- 4. 이용주차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뒷 면)

## 주 의 사 항

-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 · 바 탕: 하늘색 · 글 씨: 검정색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주차장법」</u>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u>조례로</u>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조례는 「주차장법」</u> 위임된 
제2조 <u>(적용범위)</u>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u>"구"라</u>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u>(적용 범위)</u> <u>"구"라</u>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 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이하 <u>"공영주차장"이</u> 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1과 같이 한다</u>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u>"공영주차장"이</u> <u>별표 1과 같다</u> .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         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합하여
③ <u>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에 따른 주차</u> <u>요금과 제2항에 따른</u> 가산금을 납부하지 <u>아니한 자에 대하여</u>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u>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u> -  <u>않은 사람에게</u>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u> 공영주 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u>해당하면</u>
다만, <u>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u> <u>다음 각 호 중 두 가지</u>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u>동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u>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u>적용한다</u> .	둘 <u>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u> <u>적용하며, 징수</u>

혂 행 개 정 안

-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 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 지는 면제)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를 소지한 자
  -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 한 자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5 · 18민주유공 자증을 소지한 자

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 사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소 지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 지는 면제)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 한 사람
-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 · 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현 행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 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소지한 자
-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 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를 기입한 신분증 을 소지한 자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경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으로 외부에 승용차부제 표지가 부착 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다만, 월 정기 주차는 제외한다): 50퍼센트 감면
-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1년간 100퍼센트 감면
  -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 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카)를 부 착한 차량
  -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 한 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개 정 안

-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바.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u>에 관한 조례」 ---- 예우</u> 대상자--------- 적은 ---- 소지한 사람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u>자동차:</u> -----
-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한다): 50퍼 센트 감면
- 4. -- <u>각 목</u>-----경우: -----
  - 가. ----- <u>받거나 성실</u> 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 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발급 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u>경</u>우
  - 나. ------- 사람으로서 -----

#### 혀 행 개 정 안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 <u>갈아</u>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 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퍼센트 감면 <u>탄 ----- 경우: -----</u> 6. -----6.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 른 저공해자동차로 외부에 저공해자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 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 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 차량: 50퍼센트 감면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50퍼센트 감면(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7. 주차쿠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30퍼 7.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센트 감면 8.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 8.「모자보건법」제2조제1호------- 탄 -----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 ---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수첩) 등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50퍼 센트 감면 9.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9. 아이모아카드 ---- 2자녀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 -----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0.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 10. 시장-----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 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 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50 ---- 경우: --퍼센트 감면

현 행	개 정 안
11.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u>지정에 따라</u> <u>주차가 제한되는 경우</u> 다음 각 목에 <u>따라 차이나타운(제1) 공영주차장의</u> <u>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	11 <u>지정으로 주</u> <u>차가 제한되어</u> <u>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u> <u>차장을 이용하는 경우</u>
가.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북성동 4, 6~11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u>주민: 100퍼센트 감면(토요</u> 일 및 공휴일은 4층 50면에 한함)	가( <u>개항동 3,</u> <u>5~10통)</u> <u>주민: 100퍼센트 감면</u>
나.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u>이용고객</u> :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나 <u>이용고객:</u>
<신 설>	12. 정기권을 운영 중인 주차장 인근 거 주자에 대해서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공영주차장의 경계선부터 거주 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나.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법정동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u>법 제8조 및 법</u>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u>법 제8조 및 제</u> 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생 략)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1. (현행과 같음)
1. (8 7)	1. (현장의 '본다/

현 행	개 정 안		
2. <u>발화성</u>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u>차량</u>	2. <u>자동차에 발화성</u> <u>경우</u>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 <u>(주차장의 표시)</u>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u>시행</u> 규칙 제8조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u>별표4에</u> 따른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시행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4. <u>그 밖에</u>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 차장에 <u>한한다</u> )의 표지의 규격은 <u>별표5</u> 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③ <u>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u> <u>차장에 한한다)</u>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u>노외주차장</u>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기준은 <u>별표6에 따른다</u> .	④ <u>별표 4와 같다</u> .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u>하역주차구간</u> 은 노상주차 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u>(하역주차구획의 지정)</u> ① <u>하역주차구획</u> 		
② 제1항의 <u>하역주차구간</u> 에서는 화물자동 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	② <u>하역주차구획</u>		

현 행	개 정 안
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 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	③ <u>하역</u>
에는 <u>별표4</u> 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 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	<u>별표 2</u>
사유 등을 <u>명기하여야</u> 한다.	<u>명확하게 적어야</u>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u>구청장</u>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u>구청장</u> 이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 <u>법 제13조제3항</u>
관리를 제3자에게 <u>위탁 관리하는</u> 경우	<u>위</u> 탁관리하는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li>2.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li><li>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li><li>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 조직</li></ul>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 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3
<u>경쟁입찰참가자격</u> 을 갖춘 자로서 공영	<u>입찰의 참가자격</u>
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관리수탁자 선정	② 제1항제1호
방법,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위탁자가 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는 <u>경쟁입찰</u> 방법 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u>공개경쟁입찰의</u> 
④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는 때에는 징수	<b>4</b>

현 행	개 정 안
금액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위탁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u>제10조에 따른</u>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u>지도</u> ·감독한다.	제10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u>제10조의</u> <u>지도</u> -감독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설치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u>"국토교통</u> 부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u>"시행규칙"</u> 
<ol> <li>(생 략)</li> <li>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u>아니하</u>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 이 가능한 경우</li> </ol>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u>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u> 에 따라 노 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 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 <u>(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u> ① <u>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u>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② 전용주차구획
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 량, 운영시간, <u>기타</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u></u>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준한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은	④ 전용주차구획에
지역 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 대상 차
단위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별표 1의1	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u>이경</u>
과 같이 하며 이를 선납으로 징수할 수	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선
있다. <후단 신설>	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무단 주차 차량의 견인이	6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별표 1에 따른 4급지의 전일 주차	
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u>합산</u>	<u>합하</u>
<u>하여</u> 부과할 수 있다.	여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 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②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별</u>	
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표 1제4호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 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u>의하되</u> 관리수탁자 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u>따르되,</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차표를 차창에 <u>부착하는</u> 방법	3 <u>붙이는</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u>아</u> 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 장 이용을 중지 또지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 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③ 않는 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에는 주차장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전일주차권 :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	1.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 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전일주차권: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 환불     나. 월 정기주차권: 미사용 기간의 주차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월정기주차권 :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 요금	2.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 또는 이용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장 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현 행	개 정 안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u>별표7</u>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u>하되,</u>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u>별표 5</u> <u>하되</u>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u>국토교통부령 제3조</u> 에 따른다.	② <u>시행규칙 제3조</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u>부설주</u> 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제외)에는 기계 식주차장치는 총 주차대수의 4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u>부설주</u> 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 대 이상일 것
<u>〈신 설〉</u>	2.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는 법정주 차대수(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부분 제외)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제19조의13제4항 및「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u>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후 기계식</u> 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	<u>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u>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u> 178 0年 8十9年</u>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라 <u>한다)별표 2</u> 에 따른	<u>한다) 별표 2</u>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u>2분의1의</u> 범위	<u>2분의 1</u>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ol> <li>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 장의 경계성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li> </ol>	1. <u>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u> <u>의 경계선</u> <u>600미터 이내</u>
2. <u>당해 시설물이</u>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u>말하며 이하 이호에서와</u> 같다) 및 <u>당해</u>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u>인천광역시 관할동·리</u>	2. <u>해당 시설물이</u> <u>해당</u> <u>말한다. 이하 이호에서</u> <u>해당</u> 시설물과의 <u>구 관할 동</u>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 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무상사용노외주차장</u> 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u>당해 노외주차장중</u> 주차에 사용되는 <u>총설치비용</u> (토지가액과 건축 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 누어 산정한다.	2. <u>무상사용 노외주차장</u> <u>해당 노외주차장 중</u> <u>총 설치비용</u>
3. <u>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u>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3. <u>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u> 법률」제8조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	4

현 행	개 정 안
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u>경과한 경우에는</u> 「한국은행법」 제86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 하여 산정한다.	지난 경우에는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조사・발표하는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 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u>당해</u> 시 설물 준공과 동시에 <u>별표8</u>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u>날로</u> 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	② <u>해당 -</u> <u>별표 6</u> <u>날</u>
을 <u>별표1</u>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 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 만료 일까지로 한다. 다만, <u>당해</u> 공영노외주 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u>아니하는</u>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 <u>별표 1</u> <u>해당</u> <u>않는</u>
③ 법 제19조제6항 <u>단서의 규정</u>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u>아니</u> <u>하는</u>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 치비용의 2분의 <u>1의</u>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1. ~ 4. (생 략)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객에 제공)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객에 제공) ①

현 행	개 정 안
이용에 대하여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제4조에 따른</u>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u>기타</u>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u> 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u>법 제21조의2제</u> 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조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생 략)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u>기타</u>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u>그 밖</u> <u>에</u>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u>기타</u> 금융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u>그 밖에</u>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1.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1. <u>거짓</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수령일 

# 혀 행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7. 13	1회 2	주차권	과이 즈위크	이 거기즈리긔
구분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신달 下시전	월 정기주차권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 비 고 -

-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 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3. 1구획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 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5. 주차요금의 특례
  -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의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u>(이자를 포함한다)</u>
따라 -

정

안

개

제24조(시행규칙) -----필요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7. 13	급 1회 주차권		권이즈리고	이 저기즈위기
구 분	최초 30분까지	15분 초과마다	신월구시전	월 정기주차권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 비 고 -

- 1. 전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 주차장에만 적용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해 서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 여 구청장이 따로 그 적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3. 1구획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고. 1구획을 초과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4.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 주차장에서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 5. 주차요금의 특례
  - 가.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의 형평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혀 했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 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나.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 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 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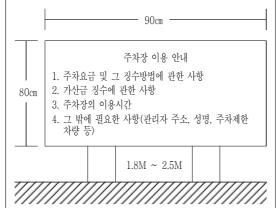
# 전용주차구획 월별 요금표

(단위:워)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비고
30,000	20,000	15,000	

#### [별표 4]

###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 개 정 안

위 표에 따른 기준요금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 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나.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해서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다. 구청장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 으로 징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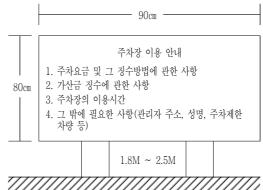
[별표1의 2]

### 전용주차구획 월별 요금표(제12조의2제4항 관련)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30,000원	20,000원	15,000원

#### [별표 2]

###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8조제1항 관련)



# 혂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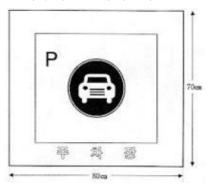
#### - 비 고 -

구분	재료	색채	
ਾਦ	세표	바탕	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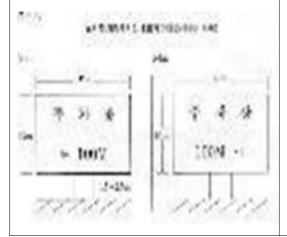
#### [별표 5]

### 노 외 주 차 장 표 시(제8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알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300cm × 세로 250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 개 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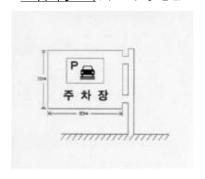
#### - 비 고 -

구분	재료	색채		
ी स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루미늄	녹색	흰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 [별표 3]

#### **노외주차장 표시**(제8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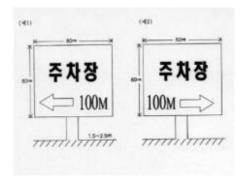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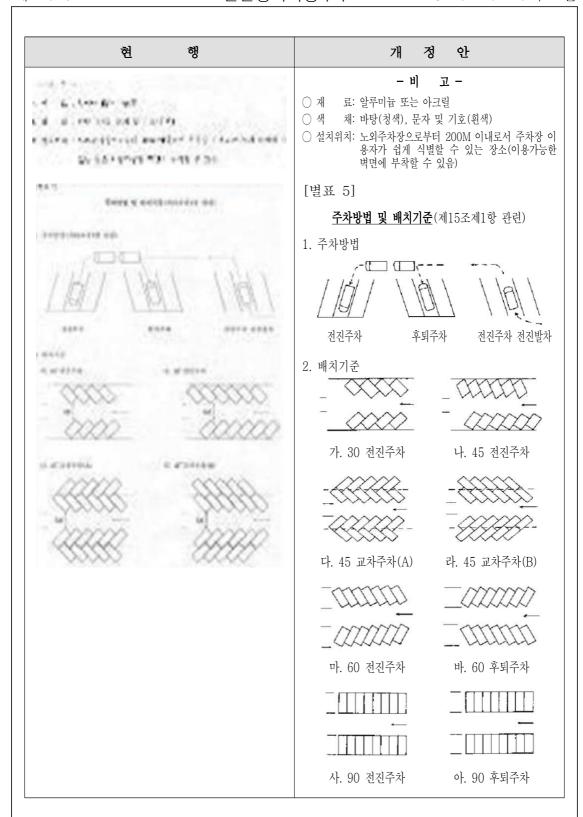
#### - 비 고 -

-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 [별표 4]

####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8조제4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별표 6]
공영주차장무상사용중(제19조제2항 관련) (앞면)	<b>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b> (제19조제2항 관련)
지역주차장무상사용중 건축물위치: 사용자: 사용기간: 이용주차장: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 - 비고 - · 바탕:하늘색 · 글씨:검정색	(앞면)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중 - 1. 건축물위치 : - 2. 사 용 자 : - 3. 사용기간: - 4. 이용주차장 :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에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	(뒷면)

# 붙임

# 관계법령

## ■ 주차장법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 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 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한다.

####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⑦ (생략)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략)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 ③ (생략)

###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서용]

# 부서별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수 2. 행정규제, 물 3. 조직 및 예 4. 주민의 권리 5. 홍보계획(보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주민용]

# 주민 의견수렴서

16,16,1					
의견제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견제출 내용	8.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1-2086호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21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